



강북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용차량 불용결정**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강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7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에 관리하는 공용차량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용결정하고자 합니다.

가. 불용결정 대상차량

정부물품 분류번호	차량등록 번호	차종	차명	수량	최초등록일	취득가액	물품상태
25101611	서울85누 2353	중형 화물	포터	1대	2003.2.21	9,800 천원	내구연한경과 및 노후 (현재 13년 2개월, 운행거리:62,011km)

나. 불용결정 사유 : 내구연한 경과 <붙임#1 참조>

다. 다른목적용 위해 사용가능 여부 : 소요 조회결과 해당사항 없음<붙임#2 참조>

라. 불용결정 후 처분방법 : 감정평가 의뢰하여 가격 산출을 통해 매각 처분

붙임 : 1. 불용결정서(1건) 1부.

2. 불요예정품 소요조회 1부.

주무관

옥영수

행정지원팀장

노용한

행정지원과장

代노용한

행정관리국장

05/10
고한석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2949 () 접수 ()

우 0107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수유동) / <http://www.gangbuk.go.kr>

전화 901-6315 /전송 901-6319 / 대시민공개